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22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민홍철 · 허성무 · 윤종근
백혜련 · 한준호 · 송재봉
손명수 · 김문수 · 임호선
문진석 · 김기표 · 염태영
김영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함)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각종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제고·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0(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차단 등)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문자정보”라 한다)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제32조의20(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차단 등)</u>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 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 신사업자는 문자메시지로 이용 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 보(이하 “불법문자정보”라 한 다)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불법문 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 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

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